

제27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
미래·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

서울특별시 강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2021. 4. 20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
미 래 · 복 지 위 원 회

서울특별시 강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1년 4월 20일
전문위원 서 선 옥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021 - 39
- 나. 제출자: 김동협 의원 외 6명
- 다. 제출일자: 2021년 4월 5일
- 라. 회부일자: 2021년 4월 6일

2. 개정이유

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·영업제한 등 방역대책 장기화로 폐업에 이른 소상공인이 재창업, 업종전환 등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 개정내용

- 가.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규정 신설 (안 제14조의1)

※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2020년 3월 22일 이후¹⁾에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에 대해서 적용함.

(부칙 제2조)

1)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'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' 조치(종교시설, 실내체육시설,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권고)가 발효된 2020년 3월 22일 이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제3조
-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
-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 및 제3조

나. 예산조치: 재해·재난목적예비비 등

다. 해당부서: 지역경제과

라. 기 타: 입법예고(2021. 4. 5. ~ 4. 10.) 결과: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조치로 폐업에 이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
- 정부 4차 재난지원금에 맞춰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에 대한 시·구 협력 민생경제 지원대책의 추진과정에서 그 지원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.
- 주요 개정내용으로는
 - 안 제14조의1에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
 - 지원대상은 강서구 소재의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으로
 - 지원내용은 재창업 지원 및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 제1호²⁾의 재난발생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지원금 지원 등 임

개별조항 검토 (안 제14조의1)

- 「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조례」 제9조(소상공인 보호)제2항제1호에서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, 취업, 재창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, 다른 서울시 자치구에서도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규정을 두고 있는 사례가 있음.
- 또한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에서는 중소기업의 육성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,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3조(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·시행해야하고 소상공인 보호·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,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본 조항의 신설은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.
- 다만,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은 재정부담이 유발되므로 이에 대한 예산 확보대책 및 집행부 의견청취 필요.

– 또한 폐업 소상공인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칙 제2조로 지원 시점을 2020년 3월 22일 이후에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으로 적용례 규정을 두었음.

개별조항 검토 (안 부칙제2조)

- 적용례는 시행일만을 규정하는 것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느 대상부터 적용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필요한 것으로 시행일을 정함과 동시에 어떤 대상에 대하여 어느 경우부터 규율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칙에 규정함.
- 2020년 3월 22일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‘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’가 시행된 시기로 그 동안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다가 특정 업종·업소에 대해 최초로 한시적 운영 중단을 권고하였음. (방역지침 위반 시설에 대해 행정명령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조치)

○ 서울시에서는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맞춰 서울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보다 폭넓고 촘촘한 피해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,

2) 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재난”이란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 - 가. 자연재난: 태풍, 홍수, 호우(豪雨), 강풍, 풍랑, 해일(海溢), 대설, 한파, 낙뢰, 가뭄, 폭염, 지진, 황사(黃砂), 조류(藻類) 대발생, 조수(潮水), 화산활동, 소행성·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·충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
 - 나. 사회재난: 화재·붕괴·폭발·교통사고(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)·화생방사고·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또는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,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
- 다. 삭제 <2013. 8. 6.>

-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 지원 시-구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음.
-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간 재원과 역할을 분담하여 효과적이고 통일된 지원을 통해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등 실질피해 업종에 대해 선별적, 직접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
- 3개 분야 12개 사업에 대하여 총 5,000억원(시 3,000억원, 25개구 2,000억원) 규모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음.

※ 지원분야 별첨자료 참고

- 코로나19 장기화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근거가 필요하며,
- 이에 우리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근거가 되는 본 조례에 폐업 소상공인의 지원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새로운 지원항목을 신설함에 따라 추가적인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재원마련에 대한 충분한 대책과 향후 지속적인 폐업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.

참고

시-구협력사업 지원분야

□ 강서구비 지원사업: **91억 2,650만원**

○ 재해·재난목적예비비 **77.325억원**/ 중소기업육성기금 **13.94억원**

소상공인 지원 [22.94억원]	① 폐업 소상공인 지원 (구비 100%)	9억원 [1,920개]
	·코로나로 폐업한 집합금지·제한 소상공인, 업체당 50만원	9억원
	② 소상공인 무이자 용자 지원 (구비 100%)	13.94억원 [1,000명]
	·1,000명에게 무이자로 2천만원까지 지원	13.94억원
취약계층 지원 [61.1억원]	③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지급 (시비 80%, 구비 20%)	7.3억원 [34,681명]
	·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에게 1인당 10만원	7.3억원
	④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급 (구비 100%)	53.8억원 [10,665명]
	·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1인당 50만원	53.8억원
피해업종 지원 [4.475억원]	⑤ 어르신 요양시설 지원 (구비 100%)	5천250만원 [1,036개]
	·선제검사 의무대상 시설 1,036개, 시설당 50~100만원	5천250만원
	⑥ 어린이집 지원 (구비 100%)	3.35억원 [335개]
	·구 소재 어린이집 335개소, 시설당 100만원 지원	3.35억원
	⑦ 지역아동센터 지원 (구비 100%)	2천만원 [20개]
	·구 소재 지역아동센터 20개, 시설당 100만원 지원	2천만원
	⑧ 마을버스 업체 피해지원금 (구비 100%)	4천만원 [4개]
	·마을버스 업체 4개, 업체당 1천만원 지원	4천만원
자율지원 [2.75억원]	⑨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 (구비 100%)	2.75억원 [550개]
	·종교시설 550개소(추정), 개소당 50만원상당 방역물품 지원	2.75억원

□ 서울시비 지원사업: 123억 6000만원+ α

소상공인 지원 (101.5억원)	⑩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 (시비 100%)	101.5억원 (14,025개)
	▪집합금지 업종(연장) 1,377개, 업체당 150만원 ▪집합금지 업종(완화) 816개, 업체당 120만원	30.5억원
	▪집합제한 업종 11,832개, 업체당 60만원	70.9억원
피해업종 지원 (221억원+ α)	⑪ 운수종사자 지원 (시비 100%)	17.4억원 (3,481명)
	▪법인택시·마을버스·전세버스·공항버스 기사 1인당 50만원	17.4억원
	⑫ 서울 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 (시비 100%)	5.04억원 (1,540명)
	▪가구소득 중위 120% 이하 예술인, 1인당 100만원 지원 - 우리구 거주 예술인활동증명서 보유자 1,540명	5.04억원
	⑬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(시비 100%)	별도추계(α)
	▪관광·MICE 소상공인 5천개사, 업체당 2백만원 지원 - 우리 구 관광사업체 518개 중 소상공인 업체 신청 지원	

※ 서울시 지원 계획에 의해 소관 부서별 집행

□ 「중소기업기본법」

제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)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(이하 “중소기업 시책”이라 한다)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(이하 “중소기업”이라 한다)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. 다만,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·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가.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
 - 나.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
2.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
3.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4.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 제2조에 따른 조합, 연합회,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
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(小企業)과 중기업(中企業)으로 구분한다.

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. 다만,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·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.

제3조(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.

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□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“소상공인”이란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.

□ 「소상공인기본법」
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“소상공인”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(小企業)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.

1.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
2.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

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. 다만,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제3조(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·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.
-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□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재난”이란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 - 가. 자연재난: 태풍, 홍수, 호우(豪雨), 강풍, 풍랑, 해일(海溢), 대설, 한파, 낙뢰, 가뭄, 폭염, 지진, 황사(黃砂), 조류(藻類) 대발생, 조수(潮水), 화산활동, 소행성·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·충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
 - 나. 사회재난: 화재·붕괴·폭발·교통사고(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)·화생방사고·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또는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,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
 - 다. 삭제 <2013. 8. 6.>